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 1723 2020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송도호 의원 외 9명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송도호 의원)

#### 가. 제안사유

○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상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 이에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고령자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

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

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

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

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○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 원 기준을 신설함(안 제10조제7항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: 2020.8.26.~2020.9.2.

○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: 원안가결1)

○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을 운행하는 대표 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, 시내버스와 달리 저상버스가 전혀 도입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마련은 필요함

○ 다만,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경우 '19년도 10월 국토부에 서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, 시내·마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모델개발·안전성 등에 대

<sup>1)</sup> 버스정책과-26079(2020.8.24.)

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, 향후 정부의 표준모델개 발 기준마련(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) 이후 제작사의 개발 진행현 황, 국비 등 재원확보 상황, 마을버스 도입 적정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# 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 련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저상버스 등이 도입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도입되는 마을버스를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링」제14조2)에 따라 국비:시비(4:6)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저 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, 한발 더 나아가 '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모든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을 세운바 있음

<sup>2) 「</sup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제14조(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)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. 1. 저상버스의 경우: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. 특별시와 광역시: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. 1. 특별시: 국가 4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

- 하지만,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크기³)는 대부분 중형에 해당되고 그 동안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서울시는 저상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저상 중형버스 개발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상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'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를 마을버스에 도입하는 것을 연구과제로<sup>4</sup>)로 선정하여 중형저 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또한,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 5)도 마련하여 중형저상버스 재원은 물론 휠체어 탑승공간 및 고정 장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도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임

○ 현행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6)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약자의 이동에 있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상 마을버스 도입과

<sup>3)</sup> 국토교통부 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'\_ 2016. 12. 현재 버스 종류는 대형버스(11m), 중형버스(9m)이며, 마을버스로 운행 중인 차량 (7m)이며 R&D로 개 발 중인 중형저상버스는 7.5m임(46p)

<sup>4)</sup> 국토교통부 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'\_ 2016. 12. <연구개발 및 제도개선> 2.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: 시내버스 뿐 아니라 마을버스 에도 중형 저상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 필요(중형 저상버스 연구개발시 예상되는 중형 저상버스 활용도는 시내버스, 마을버스 등)

<sup>5) 「</sup>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제4조(국고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 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

<sup>6) 「</sup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관련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되다 할 것임

- 또한,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고지대, 주거 밀집지역 등 대 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저상 마을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
- 다만, 마을버스 운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휠체어 탑승 등이 가능한 저상 마을버스 도입은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조문 조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마을버스 등의 도입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을버스 운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확실한 안정성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모델 개발 등 제도적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"휠체어 탑승설비"를 "기타 안전 설비"로 수정함(안 제10조제7항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723

제안년월일: 2020년 9월 8일 제 안 자: 교 통 위 원 장

#### 1. 수 정 이 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마을버스 등의 도입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을버스 운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확실한 안정성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모델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현실을 반영하여 조무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2. 주 요 골 자

가. "휠체어 탑승설비"를 "기타 안전 설비"로 수정함(안 제10조제7항)

#### 3. 참 고 사 항 : 생 략

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7항 중 "휠체어 탑승설비"를 "기타 안전 설비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정안(교통위원회안)
현 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		개 정 안 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<b>휠체어 탑승설비</b> 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 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⑦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 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 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시장의 책무)	제10조(시장의 책무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생 략)
<u>&lt;신 설&gt;</u>	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
	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
	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
	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
	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
	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
	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
	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